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[세운상가군 공공공간 조성공사(2단계)[장기1차]]

- 점검일시 : 2019.11.14 (목)
- 점검결과
- ◆ 점검자 : 이태행

○ 중량물취급 안전(건축부)

- 연결통로A 구간 카고크레인을 사용하여 사토 반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, 후크해지방지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중량물을 운반하고 있어 자재 낙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보완 요망
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149조(해지장치의 사용)



○ 추락재해 예방(건축부)

- 연결통로A 구간 H-Beam 자재를 적재하여 작업구 추락방지용도로 설치된 안전난간의 높이가 낮아져 굴착작업장으로 이동시 추락위험이 있으니 자재관리 또는 안전난간 높이 수직연장 요망
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)



○ 흠막이가시설 안전(건축부)

- 연결통로A구간 우각부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도면과 동일하게 시공하도록 시공관리감독 요망
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46조(조립도)



○ 보건 관리(건축부)

- 연결통로A 굴착작업장은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사용하지 않고 있어 공기의 질이 나쁜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으므로, 작동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사용 요망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(환기 등)



○ 추락재해 예방(건축부)

- 엘리베이터 기초 작업구간에서 사용되는 작업 발판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미끄럼에 취약한 상태이므로, 뒤집히거나, 미끄러지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여 사용 요망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(작업 발판의 구조)



○ 추락재해 예방(건축부)

- 연결통로A구간 3단 가시설은 유지관리 및 해체 작업시 사용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, 추후 4단 작업시에는 안전대부착시설을 미리 설치하고 굴삭작업이 진행되도록 작업계획 변경 및 관리 요망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(안전대의 부착설비 등)





○ 추락재해 예방(건축부)

- 3층 동측 구조물 보수보강 작업구간 및 지상도로부 작업구간은 현재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태임. 설치되어 있는 접근금지시설은 일부 미흡하게 설치 되어 있으므로 보완조치 요망
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)



○ 중량물취급 안전(건축부)

- 연결통로A 터파기 및 가시설 설치 구간에 사용될 건설장비를 작업구간으로 운반 작업시 실제 작업조건에 맞춘 중량물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장비를 인양 할 수 있도록 관리 요망
-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(사전 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)

